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닭, 오리(종계, 종오리, 부화장 포함) 허가를 받은 자는 2019.8.31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CCTV 및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으니 희망자께서는 한국오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또는 관할 시군 축산과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30%, 지방비 30%, 응자 30%, 자부담 10%)

1. 목적

- 가금 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해 임상증상 관찰로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을 평가 및 점검의 효율적 추진으로 고병원성 AI 등 가금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함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을 통한 가축전염병의 발생 최소화를 위함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사업대상자

가. CCTV 지원사업

-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계약 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기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기도 포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나. 방역시설 및 장비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4. 지원대상 자격 및 요건

<기금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포함된 기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금농가
- 위탁 계약한 기금 농가에 대하여 방역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기금 계열화 사업자(계약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기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기금 사육농가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된 지원을 받은 경우
- 위탁 계약농가의 CCTV 설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열화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5.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① CCTV 설치

가. 기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축사를 임차한 경우도 포함)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농가자체스마트폰 활용 등을 추가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말함

※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신청 가능

나.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농가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재 감지기 등)

-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루션, 휴대폰 앱 등)

※ 영상보안시스템과 환경감시시스템은 위탁 계약농장, 통제관제시스템은 계열화사업자에 지원(다만, 위탁 계약농가의 설치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농가 당 상기 지원내역의 3종 시스템을 일괄으로 추진
하되 지자체 보조금 지원은 수혜를 받는 지자체(농장 소재 지자체)에서 지원

다.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CCTV 장비와 연관되어 방역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타 장비를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지원 가능한 방역 시설 · 장비 : 올타리, 전실, 차량 세척 · 소독 시설 · 장비, 대인 소독 시설 · 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 · 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6.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응자 30%*, 자부담 10%

* 응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 · 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 · 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농가·지자체 확인사항>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 또는 계열사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

<사업 의무준수사항>

① CCTV 설치

- CCTV 사양 :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 200만 화소 이상

–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기급적 축사내부의 기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CCTV 영상기록을 최소 45일 이상 저장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축사 내 CCTV는 21일간 이상)

-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같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 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AI 간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가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 \times 2\text{cm}^2$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울타리)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등의 농가 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

7. 지원상한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단, CCTV의 경우, 지원상한액(표준사업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이 가능함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 만 원을 이미 지원받은 오리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 만 원임

<지원 단가>

구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CCTV	영상보안시스템	5,000천원
	환경감시시스템	5,000천원
	통제관제시스템	6,600천원
방역시설 및 장비	울타리, 전실, 차량 세척 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50,000천원

붙임 1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 활용

4. 제공 받는자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붙임 2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기급적 축사내부의 가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시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식별이 가능
3.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CCTV 지원에 한함)
4.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5.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6.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7.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붙임 3-1 사업계획 신청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 농가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육계(), 산란계(), 종오리(), 육용오리(), 기타() - 해당란 ○ 표시					
	사육 수수	종계(오리)		병아리 (오리새끼)	육성계 (육용오리)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m ²	면적	m ²	면적	m ²	면적	m ²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고	융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계열화사업자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화) : 핸드폰) :	
	지택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계약농가 현황	설치 농가수	종계	육계	신란계	육용오리	종오리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고	융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ain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四〇

신청자 [성명 또는 인]

시작 구수 구청장/시·도지사 구하기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총사업비도록증, 신용조사서, 범이등기부 등본(범이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금 농가용-계열화사업자용 동일

가. 세부 사업계획

- ① 설치장소 : 출입구 및 축사별 축사내부(입구 및 축사내부를 동시에 볼수 있는 장소) 권장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기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기타

②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
1.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2.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3.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루션, 휴대폰 앱 등)

〈소요자금 현황〉

사업량	사업비(천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수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사업신청서 제출 시 별첨자료 목록

〈 가금 농가용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융자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 ※ 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4호, 5호 및 6호는 제외

〈 계열화사업자용 필수 첨부자료 〉

1. 사업계획서
2.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3. 신용조사서 (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6. 건축물관리대장(사업대상 건물)
7. 농가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동의서

